

- ② 국토계획법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·군계획관리계획의 결정이 간주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제고
-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·군계획관리계획의 결정이 간주되는 경우<sup>\*</sup> 지형도면 고시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형도면 고시 근거도 보완

\* 도시정비법 §16② :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(변경지정 포함)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결정 포함)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## □ 적용요령

○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

-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

## ② 개정조문

### 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 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 기간 미집행된 토지, 지상건축 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 부 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	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다른 법률 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제2항에서 같다) 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 한 지형도면의 고시(다른 법률에 따 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